
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24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년 12월 19일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조례안 제6조제1항제1호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최종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여받고 있는바, 기금 운용사무의 일부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활동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고,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함.
- 또한,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분하고 있어 의미상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고, 조례안 제6조제1항제2호에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을 추가하고자 함.
- 한편, 기금 규모 증대에 따라 사전 통제 기능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민간위원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추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(안 제6조제1항제1호).

나. 당연직 위원을 공무원 위원으로 하고, 공무원 위원에 부교육감과
교육행정국장을 추가함(안 제6조제1항제2호).

다. 민간위원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추가함(안 제6조제1항제3호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위원장 및”을 “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당연직”을 “공무원”으로 하며, 공무원 위원에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을 추가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민간위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

가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
나. 기금의 조성·운용·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

다. 청사 건립 및 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

라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1.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.</p> <p>2.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, 예산담당관,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.</p> <p>3. 민간위원은 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</p>	<p>제6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</p> <p>1.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2.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, 예산담당관,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.</p> <p>3. 민간위원은 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</p>	<p>제6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2. 공무원 위원은 부교육감, 교육행정국장, 총무과장-----.</p> <p>3. 민간위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</p> <p>가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</p> <p>나. 기금의 조성·운영·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</p>

<p>② ~ ④ (생략)</p>	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있는 전문가</p> <p>다. 청사 건립 및 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p> <p>② ~ 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	---	--
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”를 “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”를 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로 한다. 또한, 같은 항 제2호 중 “당연직”을 “공무원”으로 하고, 공무원 위원에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을 추가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민간위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

가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
나. 기금의 조성·운용·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다. 청사 건립 및 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

라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1.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<u>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.</u></p> <p>2. <u>당연직</u> 위원은 <u>총무과장</u>, 예산담당관, <u>교육재정과장</u>으로 한다.</p> <p>3. 민간위원은 <u>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</u>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 <신설> <신설></p>	<p>제6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--- ----- ----- --- <u>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</u></p> <p>1. ----- ----- <u>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2. <u>공무원</u> 위원은 <u>부교육감, 교육행정국장, 총무과장</u>----- -----.</p> <p>3. 민간위원은 「<u>지방공무원법</u>」 제31조에서 정한 <u>결격사유가 없고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</u>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가. <u>서울특별시의회 의원</u> 나. <u>기금의 조성·운용·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</u> 다. <u>청사 건립 및 관리 분야</u></p>

<신설>

② ~ ④ (생략)

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

라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